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
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오영주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365호, 2024.2.27. 공포, 2024.8.28. 시행)됨에 따라,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전문지원기관 자격의 범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전문지원기관 자격 범위 확대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(안 제27조)

- 1) 전문지원기관의 자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활성화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으로 확대
- 2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

나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(안 제29조)

- 1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까지로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 제목 “(전문지원기관의 지정)”을 “(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

가.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활성화구역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

나. 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

다. 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
3.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·

시설 및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또는 단체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32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전문지원기관
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지원기관에 30일 이내의
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동안
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
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
게시하여야 한다.

제2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전문지원기관의 지정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”이라 한다)을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27조(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. 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.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활성화구역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나. 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. 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.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·시설 및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

<신 설>

<신 설>

제29조(업무의 위탁) 중소기업부
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
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
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 설>

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중소기업부장관이 법 제
32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전문
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
경우에는 해당 전문지원기관에
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
기준을 갱출 것을 요구할 수 있
으며, 그 기간 동안 지정 기준을
갯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
있다.

③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
32조제4항에 따라 전문지원기
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
그 사실을 중소기업부 인터넷
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9조(업무의 위탁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884